

CCTV 이설공사

용역 계약서

금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
주식회사 찬성이앤씨

# 공 사 용 역 계 약 서

- 공 사 명 : 금곡2구역 내 CCTV 이설 공사
- 현 장 명 : 금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기존설치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9-59번지 일원
- 이전설치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27-36  
주곡초등학교 후문 인근 3거리 학교측 인도 끝

2026년 6월 일

**발주자(갑)** 상 호 : 금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
주 소 :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04-95, 2층  
성 명 : 조 합 장 정 삼 섭 (인)

**수급자(을)** 상 호 : 주식회사 찬성이앤씨  
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7길 21, 2층  
성 명 : 대표이사 김 경 하 (인)

# 공 사 용 역 계 약 서

## 제 1 조 (총 칙)

금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이하"갑"이라 한다)과 (주)찬성이앤씨 (이하"을"이라 한다)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일반조항과 공사 및 현장 여건 등에 의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.

## 제 2 조 (계약체결)

"갑"과"을"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 을 작성 날인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## 제 3 조 (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)

"을"은 계약체결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 및 채권과 담보를 "갑"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 할 수 없다.

## 제 4 조 (용역기간)

용역기간은 계약 체결 후 용역 완료일까지로 한다.

## 제 5 조 (용역의 범위)

① 본 용역의 범위는 금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CCTV 이설에 따른 제반 업무를 주 내용으로 한다.

② 구체적 용역범위

### ㄱ. 사전 현장 조사 및 계획

기존 CCTV 설치 위치 및 선로 상태 확인  
이설 예정 위치의 수신 상태 및 화각 시뮬레이션

### ㄴ. 기존 설비 해체 및 철거

기존 설치된 카메라, 브라켓, 하우징 및 부속 자재의 안전한 해체  
기 가설된 케이블(UTP, 전원선 등)의 철거 및 수거

### ㄷ. 이설 및 신규 설치

지정된 위치로의 카메라 본체 및 부속품 이전 설치  
신규 경로에 따른 배관·배선 공사 (관로 포설 및 몰딩 마감 포함)  
신호 전송을 위한 단자 처리 및 네트워크 설정

### ㄹ. 시스템 최적화 및 시운전

카메라 각도(화각) 조정 및 포커스 최적화  
녹화 장치(DVR/NVR)와의 연동 확인 및 영상 저장 테스트

## 제 6 조 (업무착수 및 진행)

- ① "을"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"갑"의 지시에 따라 즉시 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은 본 용역업무 진행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며, "갑"은 업무 진행자와 상호 협조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.
- ③ "을"은 각 용역업무에 따른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.

### 제 7 조 (안전관리)

- ① "을"은 용역업무 수행 중 "갑"의 안전관리 규칙 및 작업안전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투입 전 시공인력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의 공사시공 중 작업방법이 불안전할 때에는 "갑"이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방법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을"은 즉시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"을"은 본 용역수행(공사 시공)과 관련하여 "갑" 또는 "을"의 종업원과 제3자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위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### 제 8 조 (기한연장과 지체상금)

- ① "을"은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 할 때에는 "갑"의 동의를 얻어,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"을"의 책임이 있을 시는 지체일수 1일에 도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. 단, "을"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나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징수를 면제한다.
- ② 전기 1항의 단서 사유로 인하여 공사 진행상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"을"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"갑"에게 연기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상기 사항은 "을"의 명백한 사유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적용한다.

### 제 9 조 (용역금액 및 대금지급) 용역금액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계약 금액 : 일금 일천일백만원정 (₩ 11,000,000 ) - (VAT 별도)
2. 공사비의 지불은 아래 규정에 의하여 지불한다.

구 분	비 율	지급시기	공급가액	부가세	합계	비고
계약금	30%	계약 시	3,300,000	330,000	3,630,000	
잔 금	70%	용역완료 시	7,700,000	770,000	8,470,000	
합 계	100%		11,000,000	1,100,000	12,100,000	

3. "갑"이 "을"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, 해당 지급시기에 "을"이 "갑"에게 청구하며, "갑"은 "을"이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"을"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.

### 제 10 조 (계약조건 변경)

계약 체결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 
(단, 계약금액 변경 시에는 최초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)

**상호 합의:**본 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'갑'과 '을'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**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:**'갑'의 요청이나 현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(지장물 발견, 구조적 결함 등)로 인해 이설 위치나 공사 내용이 변경될 경우, '을'은 공사비 증액 및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'갑'은 이에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.

**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:**계약 체결 후 주요 원자재 가격이나 노무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계약 금액 유지가 곤란한 경우,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**효력 발생:**변경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서명·날인한 변경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## 제 11 조 (종업원 및 고용원)

- ① "을"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술 분야의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(해당 면허증 소지자)만을 채용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은 자기의 대리인,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사고 및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, "갑"이 "을"의 대리인,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.

## 제 12 조 (계약의 해제,해지)

- ① "갑"은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.
  1. "을"이 정당한 사유 없이 "갑"의 지시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지 않을 때
  2. 용역업무기간 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할 때 ("을"의 명백한 사유로 인하였을 때)
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"을"에게 통지하고 쌍방 협의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## 제 13 조 (손해배상)

- ① "갑"과 "을"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"을"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"갑"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 제 14 조 (책임범위)

- ① "을"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, 진정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한다.
- ② "을"은 공사와 관련하여 "갑"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시"을"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책임진다.
- ③ "을"은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"갑" 및 타인의 재산 또는 신체에 피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.

## 제 15 조 (어구의 해석 분쟁 및 계약의 효력)

- 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분쟁 시 "갑"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- ② 본 계약서의 계약서상 어구해석 및 기타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"갑", "을"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, 상호 협의 불성립 시 상관례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.

③ "갑"의 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 승계된다.

## 제 16 조 (특약사항)

① 용역비 계약금을 지급받는 시기는 본 건 용역 계약 시 신청하여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한다.

- 이하 여백 -

10/15/20